

드론의 군사적 활용에 따른 국제법적 쟁점 - 차별의 원칙과 비례성 원칙을 중심으로 -

조홍제*·강호중**

목 차

- I. 서론
- II. 드론의 군사적 활용에 따른 국제법적 쟁점
 - 1. 전쟁법의 기초이론
 - 2. 드론 작전과 차별의 원칙
 - 3. 드론 작전과 비례의 원칙
- III.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책임연구위원 (E-Mail : chj3050@naver.com).

** 경남대학교 군사학과 부교수 (E-Mail : kangsi44@kyungnam.ac.kr).

I. 서론

최근 드론은 민간, 상업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군사용으로 그 효용성이 더욱 높다. 최근 미국, 중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드론을 활용하여 많은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드론은 사전적 의미로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조종 또는 자동으로 비행할 수 있는 동력 항공기를 말하는데¹⁾, 국제적으로 드론에 관하여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 조금씩 다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에 관하여 FAA(미국 연방항공청)은 과거에 ROA(remotely operated aircraft)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영국에서는 "unmanned aircraft"라는 용어도 사용하였다. 한편, 「항공안전법」에서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자동으로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를 무인항공기라고 하고 있다.²⁾ 무인항공기는 자체중량이 150kg을 초과하는 ‘무인항공기’와 그 이하인 ‘무인비행장치’로 구분한다. 사람이 타지 않고 원격으로 무선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조종하거나, 내장된 프로그램 등에 의해 자동으로 비행하는 비행체로 레저용으로 쓰일 뿐 아니라, 정찰, 항공촬영 등에 활용되고 있다.

드론은 베트남전에서 탐색정찰을 위해 주로 활용되었으나, 최근에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더욱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2011년 9.11테러 이후 무인항공기가 아프카니스탄과 파키스탄에 있는 테러리스트를 공격하기 위해 그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미 공군은 ‘항구적 자유작전’에서 즉각 무인항공기를 사용하였고, 최초 작전 1년간 아프카니스탄에서 약 115개 표적을 타격하였다.³⁾ 미국의 CIA도

-
- 1) 드론은 조종사를 탑승하지 않고 지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한 비행체로서 독립된 체계 또는 우주/지상체계들과 연동시켜 운용하며, 활용분야에 따라 다양한 장비(광학, 적외선, 레이더 센서 등)를 탑재하여 감시, 정찰, 정밀공격무기의 유도, 통신/정보중계, EA/EP, Decoy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폭약을 장전시켜 정밀무기 자체로도 개발되어 실용화되고 있어 향후 미래의 주요 군사력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군사용어사전, 일월서각, 2012. 5. 10.)
본 연구에서는 무인기를 드론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 2) 「항공안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와 「항공안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 그 밖에 원격·자동·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
 - 3) 이영진, “무인항공기의 발전과 국제법적 쟁점”, 「항공우주법학회지」, 제26권 제2호, 한

중동에 있는 알카에다 세력을 타격하기 위해 무인항공기를 사용하게 되었다.

무장된 드론의 작전적 이용은 크게 두 개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 바, 하나는 군사적 작전의 직접적 지원, 또 하나는 살인자를 사살하는 임무이다. 초기 ‘항공적 자유작전’에서 드론의 최초 군사적 이용은 공격용 무기와 정찰도구로서 사용되어졌다. 그리고 목표물을 확인하고, 위치를 확인하여 제거하는데 특별히 유용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2007년까지 군에서는 이라크전의 적의 작전지역에서 유용하게 되었고 그 후 수요가 급증하였다. 반면에, CIA의 드론 프로그램은 파키스탄의 부족지역에서 살인자를 사살하는 데 유용한 무기로 이용되었다. 파키스탄의 원거리에 있는 테러 제거작전에서는 무인기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지상에 어떠한 군사력도 없으며 단지 목표물을 제거해야 하는 지역에서 드론을 사용하였다.⁴⁾

최근에는 테러리스트들도 드론을 이용하여 요인암살과 주요산업시설을 공격하였다. 예를 들면 2016년의 ISIL 이라크 북쪽에 있는 상대방을 공격하여 2명을 사살시켰으며, 2018년 1월에는 시리아 반군이 13개의 군집드론을 이용하여 러시아 기지를 공격하기도 하였다. 또한 2018년 8월에는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대한 드론공격, 2019년에는 9월에는 이란 반군들의 사우디아라비아 유전시설을 공격하기도 하였다.⁵⁾

특히, 미국은 중동전에서 드론을 많이 사용하였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Predator 이나 Reaper라는 드론으로 적의 상공을 수 시간씩 비행하면서 원격으로 정찰임무와 유도미사일을 발사하였다.⁶⁾ F-35 스텔스 전투기는 지상요원들의 표적정보에 의존하면서 몇 시간 동안만 임무지역에 머무르면서 조종사의 생명 위험을 안고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 반해, 드론은 최소의 비용으로 조종사의 생명에 대한 위험도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군가전문가들은 드론을 군사혁신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하기도 한다. 드론의 실시간 정보획득과 정밀타격능력 그리고 로봇과 유사한 감항능력은 적 지상군의 대응공격을 거부하기에 충분하다는 점이다.

국방공우주정책·법학회, 2011, p. 9.

4) 이영진, 전개논문(주3), p. 15.

5) JACOB WARE, "TERRORIST GROUPS,ARTIFICIAL INTELLIGENCE, AND KILLER DRONES", september 24, 2019.

6) Jeremy Rabkin and John Yoo, STRIKING POWER, New York, 2017, p. 131.

어떤 평가에 따르면, 미국은 2004년에서 2015년 사이에 파키스탄에 있는 테러 지도자들에게 389회의 드론 공격을 하였다. 2006년에서 2015년간에 탈레반, 알카에다 요원 2,789명을 사살하였으며, 이 와중에 158명의 시민이 희생되었다고 알려졌다.⁷⁾ 오바마 행정부 당시 전통적인 의미의 전역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테러 단체에 대한 공격을 드론이 수행하였던 것이다.

이같은 드론 공격에 대해 비판은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특히, 유엔에서는 2010년 5월에 특별사찰관을 임명하여 ‘표적살인(targeted killing)’에 대하여 조사토록 하였다. 필립 알스톤은 미국의 드론 공격과 관행은 국제법을 위반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⁸⁾ 그리고 일부 다른 학자들도 미국의 파키스탄에 대한 드론 공격은 전통적인 국제분쟁지역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국가가 아닌 사인이나 사적 단체는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한다. 전쟁은 특정한 지역과 시점에서 교전행위가 발생하는 데 반해 테러리스트들은 단속적으로 은밀하게 국가적 지원없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은 자위권의 일환으로 국가가 무력을 사용할 국가의 권리인 유엔헌장 제51조의 ‘무장공격’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노트담 교수 메리 오코넬은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에 대응하는 무력대응은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를 위한 기준을 거의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⁹⁾

이같이 오늘날 드론 공격에 대한 법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드론 공격은 과거와 같은 수단과 방법과는 달리 새로운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합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드론공격의 성격을 국제법적 측면에서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전쟁법의 기본원칙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드론공격의 합법성에 대해 비례성의 원칙과 차별의 원칙을 중심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7) Ibid, p. 132.

8) Ibid, p. 139.

9) Ibid, p. 140.

II. 드론의 군사적 활용에 따른 국제법적 쟁점

1. 전쟁법¹⁰⁾의 기초이론

전통적인 형태의 전쟁법은 중세 후기부터 기독교와 기사도의 영향을 받아 발전되어 온 이래 헤이그 및 제네바 조약에서 집적되어 표현되었다고 할 것이다.¹¹⁾ 전통적 전쟁법은 기본적으로 교전당사자가 적의 군사능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종류 및 정도의 군사력을 사용할 군사적 필요성(military necessity)과 전쟁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불명예스러운 수단, 방법, 행위를 금지하려는 인도적 요청(demands of humanity)이라는 상반된 가치와 조화의 산물로서 다양한 원칙을 파생시키고 있다.¹²⁾ 그 원칙은 불필요한 고통 금지의 원칙, 차별의 원칙, 비례의 원칙, 필요의 원칙, 인도주의적 원칙 등이다. 다음에서 전쟁법의 기본원칙을 간략히 검토하고자 한다.

1.1 무력충돌법

오늘날 국제법학상으로는 전쟁법(Law of War)이라는 용어보다는 무력충돌법(Law of Armed Conflict; LOAC)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미군도 문서상으로는 구두로나 LOAC이라는 용어를 더 보편적으로 사용한다. 그 이유는 ① 현대 국제법에서는 국제관계에서 전쟁이 위법화 되어 있어 충돌 당사국들은 “전쟁”이란 말을 꺼리고, ② “무력충돌”이란 국가간의 전면전과 같은 고강도 분쟁상황 뿐 아니라 각종 국지적, 부분적 무력충돌은 물론 전쟁 이외 군사작전(MOOTW)까지 포괄하는 유연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방부 훈령 제391호 “전쟁법 준수보장을 위한 규정”(1989.5.18.)에서는 여전히 전쟁법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 전쟁법이란 용어가 더 간명하므로 여기

10) 전쟁법은 국제공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국가의 행위를 다루며, 순전히 내부적인 내전양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의 합의는 내부적 충돌에도 관련이 있다.

11) 미국 군사교범(FM 27-10,1940)은 전통적인 전쟁법의 일반원칙으로 군사적 필요원칙, 인도주의 원칙, 기사도의 원칙을 들고 있다.

12) 임택규, 『전쟁과 국제법-정당한 전쟁론을 중심으로-』, 법문사, 1985, p. 141.

서도 주로 전쟁법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1.2 국제인도법

국제인도법은 민간인, 포로, 상병자, 문화재의 보호 등 인도주의적 요청을 충족하기 위한 국제법을 말한다. 국제인도법은 주로 전시에 있어서의 인도주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성되었으므로 전쟁법과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으나, 국제인도법 중에도 전쟁법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전쟁법 중에도 국제인도법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1.3 전쟁 관습법

전쟁의 관습은 전쟁 관습법을 탄생시켰다. 군사력과 관련되어 지속적이고 단적으로 말할 수 있는 법의 주요한 목적은 제한이다. 이것은 1899년 헤이그 평화협정에서 채택된 2차 협정서 22조에 의한 국제적 도구로서 처음으로 가장 잘 요약되었을 것이다. 적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수단을 채택하는 교전국의 권리는 무제한적이다. 그러나, 국제관습법 체계으로부터 유출된 전쟁관습법은 매우 적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경우에 무엇이 전쟁법에 부합하는 것인지는 사실상 확정하기 어렵다. 국제조약으로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많을 뿐더러, 설령 국제조약에 규정되었다 하여도 그 내용은 추상적인 경우가 많다. 또한 국제관습법이라는 것도 이를 중국적으로 판단할 권위를 가진 기관이 없는 이상 분명한 것이 아니다.¹³⁾

전쟁법은 기본적으로 국제법에 속한다. 이같은 국제법에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국가의 사살가능공격을 금지한다. 이러한 요건은 공격이 분쟁지역 내에서 발생하는지 밖에서 발생하는지에 따라 다르다. 분쟁지역에서는 국제인도법이 적용되고, 국제적 무력충돌의 경우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IAC)) 각 국가는 적국의 군대를 공격할 수 있다. 그러나 전쟁법도 국제관습법과 더불어 발달하여 왔으며, 제네바협약과 헤이그협약, 국제인도법 등으로 성문화되었다.

13) 이영진, 전개논문(주3), p. 10.

1.4 조약법

전쟁에 관련된 국제관습법은 현대에 와서 조약형태로 성문화 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헤이그와 제네바협약이다.

1.4.1 헤이그협약(1899년과 1907년)

헤이그 협약은 전투행위에 있어서의 교전자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며, 해적 수단(害敵手段)의 선택에 제한을 가한다. 주로 1899년과 1907년에 헤이그에서 체결된 협약들이 헤이그법을 구성하지만, 반드시 '헤이그'란 명칭이 붙은 것만 헤이그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진시에 특정한 투사물의 사용을 금지한 1868년 St. Petersburg 선언이나 질식성·유독성 가스와 세균학적 방법의 사용을 금지한 1925년 제네바 의정서도 이에 속한다.¹⁴⁾

1.4.2 제네바협약

제네바 협약은 적대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인원과 전투능력을 상실한 군사요원의 안전을 보호 하려는 것이다. 제네바법의 보호대상은 전쟁포로·부상자·병자·난선자 등 무력충돌의 희생자가 된 자, 민간인 일반, 무력충돌의 희생자를 돌보는 자(특히 의료요원) 등이다. 제네바법은 인도주의적 성격을 보다 명확히 나타내면서 적십자의 이상을 실체화하고 있으며 그 성안(成案)과 시행에는 국제적십자사(ICRC)의 역할이 개입되어 있다.¹⁵⁾

1.5 전쟁법의 주요원칙

1.5.1 불필요한 고통(Unnecessary Suffering) 금지의 원칙

전쟁의 교전 당사자는 최소한의 시간과 생명 및 경제적 희생으로 적의 전투능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파괴 및 살상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이러한 전투방법 및 수단에 대한 교전 당사자의 권리는 무제한이 아니다.¹⁶⁾

14) 이영진, 전계논문(주3), p. 11.

15) 이영진, 전계논문(주3), p. 13.

16) SIPRI(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Law of War and Doubtful Weapons, (Stockholm: Almqvist & Wiksell International, 1976), pp. 8.-15.

이러한 원칙은 1907년의 Hague 조약 제23조에서 잘 규정되어 있다. 즉, 무기를 버리거나 투항을 하는 적의 살상금지(제23조 c),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무기 사용의 금지(제23조 e)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1.5.2 군사적 필요의 원칙(Principle of Military Necessity)

군사적 필요의 원칙은 가용한 경제적, 인적자원을 최소로 사용하면서 적의 신속한 제압을 통해 필수불가결한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고 동시에 국제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제한적인 군사력의 사용은 정당화된다는 원칙이다. 이는 교전당사국은 적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는 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명백한 군사적 가치를 가지는 목표물만을 공격해야 하며, 군사상 필요를 초과하여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하는 무기의 사용은 금지된다.¹⁷⁾

특히, 군사적 필요성과 관련하여 UN헌장 제2조 제4항은 무력의 위협과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무력의 위협은 항상 금지되지만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되어왔다. 무력의 위협이 궁극적으로는 무력의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때문이기도 하다.¹⁸⁾

1.5.3 차별의 원칙

차별은 무기와 목표물 등과 같은 수단의 선택에 있어서 주의를 강조한다. 비전투요원의 면제와 전쟁을 넘어서 환자, 부상당한 자 그리고 난파선과 무기 및 목표물과 같은 수단의 선택에 있어서 주의를 강조한다. 그리고 지리적 내용 및 다른 한계를 언급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비전투요원과 전투요원의 구분이다.¹⁹⁾

일반적으로 전쟁법은 비전투요원으로 간주되어지는 어떤 사람에 대한 공격은 금지한다.²⁰⁾ 전쟁법은 공격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특성화시키기 위해서 전투원

17) 이영진, 전제논문(주3), p. 10.

18) 신흥균, "우주공간에서의 무기배치와 사용의 법적 지위",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2권 제2호, 한국우주정책법학회, 2017, p. 256.

19) Adam Roberts & Richard Guelff, Introduction to DOCUMENTS ON THE LAWS OF WAR, 1, 14(Adam Roberts & Richard Guelff, eds., 1989), p. 5.

20) LESLIE C. GREEN, THE CONTEMPORARY LAW OF ARMED CONFLICT 101 (1993). Professor Green, quoting from a treatise dating to 1802, states that "it is

이라는 범주를 설정하였다. 지상 전투의 관습과 법에 관한 1907년 헤이그 협약의 부속규정인 전투요원을 인식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²¹⁾

- (a) 부하들을 다룰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지휘를 받는 자
- (b) 멀리서도 인식할 수 있는 현저한 상징물을 가진 자
- (c) 공개적으로 무기를 소지하는 자
- (d) 전쟁의 관습과 법에 따라 작전을 수행하는 자

특정한 무기나 전쟁방식이 명시적인 조약이나 관습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도주의원칙(principle of humanity)과 공공양심(public conscience)의 명령에 따라 금지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마르텐스조항(Martens Clause)은 1899년 헤이그협약(II) 및 1907년 헤이그협약(IV)의 전문(前文)에 언급되었으며,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1조 제2항에도 명시되었다. 이에 따르면 “본 의정서 또는 다른 국제협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간인 및 전투원은 확립된 관습, 인도주의원칙 및 공공양심의 명령으로부터 연원하는 국제법원칙의 보호와 권한 하에 놓인다.” 마르텐스 조항은 명확한 국제법 규정이 없을 경우 규제와 관련된 방향을 제시해준다는 의의가 있다.²²⁾

1.5.4 비례의 원칙

비례의 원칙은 군사적 필요성이나 차별보다 더욱 어려운 개념이다. 그것은 기대되는 군사적 이점과 야기될 손해간의 균형을 요구한다.²³⁾ 그것은 근본적으로 재산이나 시민에게 부가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군사력 사용을 금지한다.²⁴⁾ 로버트와 구엘프가 지적하였듯이 이러한 이념은 두 가지 상황을 언급할 수 있

only with the writers of the nineteenth century that either a clear definition or the rights of soldiers or the first usage of the term 'combatants' is found."

- 21) 전쟁법은 포로, 부상자, 환자나 난파 당한자를 보호한다. 전투원은 모든 군사 구성원들을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목사나, 의무 관련자와 같은 사람들은 포함하지 않는다.
- 22) 임예준, “인공지능 시대의 전쟁자동화와 인권에 관한 소고:국제법상 자율살상무기의 규제를 중심으로”, 고려법학 제92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pp. 278-279.
- 23) Green War: An Assessment of the Environmental Law of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22:1 YALE J. INT'L L. 1, 52 (1997), p. 55.
- 24)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Nicar. v. U.S.), 1986 I.C.J. 4, 94.

다.25) 비군사적 목표 또는 비전투원에 미치는 부수적 효과가 기대되는 군사적 이익을 명백히 초과하는 때에는 공격이 금지된다. 즉 합법적인 무기로 합법적인 군사목표물을 공격한다고 하여도, 그로 인해 얻을 이익보다 부수적으로 초래될 민간인 피해가 훨씬 더 크다면, 그러한 공격은 금지된다. 물론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가 전혀 없을 수는 없으나, 지휘관은 군사적 이익과 부수적 피해를 반드시 비교하여야 하는 것이다. 부수적 피해의 위험이 클수록 공격목표의 중요도도 높아야 공격이 정당화될 수 있다.26)

비례의 원칙은 여러 전쟁법규에서 성문화되어 있다. 목적과 수단의 비교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무차별공격의 부당성도 비례의 원칙에 근거한다. 예컨대, 1949년 제네바협약 제1의정서 제51조 제5항은“우발적인 민간인 생명의 손실, 민간인에 대한 상해, 민간물자에 대한 손상, 또는 그 복합적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공격으로서 소기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군사적 이익에 비하여 과도한 공격”을 무차별 공격의 유형으로 간주함을 규정하고 있다.

비례의 원칙은 전쟁수행에 있어 직접적인 군사적 이익과 공격으로 인한 부수적 피해와의 관계를 고려한다.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51조 제5항 (나)는 “우발적인 민간인 생명의 손실, 민간인에 대한 상해, 민간물자에 대한 손상 또는 그 복합적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공격으로서 소기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군사적 이익에 반하여 과도한 공격”은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합법적인 군사목표물의 공격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한 군사적 이익보다 민간인이나 민간물자에 대한 부수적인 피해가 더 크게 발생한다면 그러한 군사력의 사용은 금지된다.27)

1.5.5 인도주의 원칙

전쟁에서도 최소한의 기본적 인권은 수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전당사국은 부상자나 포로 및 민간인들을 인도적으로 대우하여야 하고,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 공격수단(생물학 또는 화학무기) 및 사용자가 제어할 수 없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5) Roberts & Guelff, at 5. The concept of reprisals has proven controversial in international law.

26) 이영진, 전계논문(주3), p. 17.

27) 임예준, 전계논문(주22), p. 282.

인도주의 원칙은 다양한 개념을 포함하는바 소위 ‘기사도’라고 불리어지는 개념을 포함하여 인도주의 원칙은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간주되는 전쟁의 방법과 불법적인 수단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하였다.²⁸⁾

2. 드론 작전과 차별의 원칙

앞에서도 보았듯이 차별은 무기와 목표물 등과 같은 수단의 선택에 있어서 주의의 강조한다. 비전투요원의 면제와 전쟁을 넘어서 환자, 부상당한 자 그리고 난파선과 무기 및 목표물과 같은 수단의 선택에 있어서 주의를 강조한다. 그리고 지리적 내용 및 다른 한계를 언급하였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비전투요원과 전투요원의 구별이다.²⁹⁾

공격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특성화시키기 위해서 전투원이라는 범주를 설정하였다. 지상 전투의 관습과 법에 관한 1907년 헤이그 협약의 부속규정은 전투요원을 인식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언급하고 있다.³⁰⁾ 드론을 사용함에 있어서 군사작전 시 전투요원에 대한 공격은 합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서도 테러행위를 지휘하거나 직접적으로 행동하는 자에게 공격하거나 목표물로서 타격하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하들을 지휘할 수 있는 자, 그리고 그에게 지휘를 받는 자(즉, 지휘계통-chain of command)에게 대한 공격은 적법하며, 공개적으로 무기를 소지하는 자도 타격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³¹⁾

28) Burrus M. Carnahan, Unnecessary Suffering, The Red Cross and Tactical Laser Weapons 18 LOY. L.A. INTL & COMPL.J. 705, 714 (1996); Declaration Renouncing the Use, in Time of War, of Explosive Projectiles Under 400 Grams Weight, Dec. 11, 1868, (1907 Supplement) 1 AM. J. INTL L. 95.; Concerning Expanding Bullets, July 29, 1899, (1907 supp.) 1 AM. J. INTL L. 155. ;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Conventional Weapons] on Non-Detectable Fragments (Protocol I), Apr. 10, 1981, 1342 U.N.T.S. 7 ; n172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Conventional Weapons] on Blinding Laser Weapons (Protocol IV), Oct. 13, 1995, 35 I.L.M. 1218 (1996)

29) Adam Roberts & Richard Guelff, Introduction to DOCUMENTS ON THE LAWS OF WAR, 1, 14(Adam Roberts & Richard Guelff, eds., 1989), p. 5.

30) 전쟁법은 포로, 부상자, 환자나 난파 당한자를 보호한다. 전투원은 모든 군사 구성원들을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목사나, 의무 관련자와 같은 사람들은 포함하지 않는다.

첨단 기술력으로 인해 드론은 전투원과 비전투요원을 더욱 잘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역사적으로는 전투요원들은 통일된 군복을 입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구별이 쉬웠다. 그러나 오늘날 테러와의 전쟁에서는 테러리스트들은 전통적인 복장을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를 야기 시킨다. 따라서 일반 시민들과 테러리스트를 구별하기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 추가의정서 4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교전 당사국은 시민과 전사 그리고 민간 목표물과 군사적 목표물을 항상 구별하고 단지 군사적 목표물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

미국은 더욱 더 정확한 정보수집 필요성에 따라 드론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게 되었다. 알카에다와 분쟁 시 차별의 원칙상 실시간 정보수집체로서 최초로 채택되었던 드론은 지상군과 비교함으로써 더욱 좋은 선택이 된 것이다.

민간인은 직접적으로 적대행위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공격할 수 없다. 몇몇은 낮에는 농업을 하고 밤에는 전투를 하는 “지속적 전투 활동”을 하는 민간인들도 국제인도법상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³²⁾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경우 (NIAC)나 국가와 테러조직 같은 비국가단체간의 무력충돌의 경우 국가는 비국가단체의 군대만 공격할 수 있다. 하지만 무력충돌 밖에서의 법은 완전히 다르다. 모두가 민간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 말고는 공격할 수 없다. 비록 미정부와 언론이 전쟁지역 밖에서의 군사작전을 설명할 때 “전투원”이나 “무력단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러한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무력충돌지역 밖에서는 “전투원”이나 “무력단체”가 있을 수 없다. 무력충돌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국제인권법 (IHRL)이 적용되고, 사실상가능공격에 엄격한 제한을 두기 때문이다.

흔히 드론이 표적공격을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표적을 찾아내고, 구별해내고, 공격이 국소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서 주위의 피해가 적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 반대이다. 정찰횟수가 많기 때문에 표적을 찾아내는 것은 사람이 직접 수색하는 것보다 빨라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상이 되는 군사목표물을 민간인과 구별해내는 작업은 드론에서 보내어진 스크린에서 이루어지고

31) 이영진, 전개논문(주3), p. 16.

32) Kerstin Fisk, Jennifer M. Ramos, Preventive Force: Drones, Targeted Killing, and the Transformation of Contemporary Warfare Paperback, NYU Press(July 5, 2016), p. 172.

있는데 카메라의 기술 발달이 아직까지는 개인이 육안으로 직접 식별하는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영국도 이러한 이유에서 사람의 감독을 배제한 드론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공격의 국소성인데 CIA가 조종한 무인항공기에 의한 민간인 피해자 조사만하여도 CIA통계에 따르면 최소치 1,148명, 최대치 1,727명에 이른다. 국방부 무인항공기에 의한 민간인피해를 더하면 3,000명 이상의 민간인 피해 수치가 나올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통계와 기술발달 현황에 근거하면 무인항공기는 구별의 원칙에 위반하여 운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구별의 원칙위반의 결과로써 민간인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이며, 이는 동시에 전쟁범죄이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의 60%가 민간인 오폭에도 우려에도 불구하고 무인항공기를 공격에 사용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알려졌다. 여론의 힘으로 무인항공기가 국제인도법의 기본원칙을 위반하는 것을 넘어가지 않도록 무인항공기에 사용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국내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³³⁾

3. 드론 작전과 비례의 원칙

비례의 원칙은 군사적 필요성이나 차별보다 더욱 어려운 개념이다. 그것은 기대되는 군사적 이점과 야기될 손해간의 균형을 요구한다.³⁴⁾ 그것은 근본적으로 재산이나 시민에게 부가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군사력 사용을 금지한다.³⁵⁾ 기대되는 군사적 이익이 예상되는 시민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능가해야만 한다. 로버트와 구엘프가 지적하였듯이 이러한 이념은 두 가지 상황을 언급할 수 있다.³⁶⁾ 비군사적 목표 또는 비전투원에 미치는 부수적 효과가 기대되는 군사적

33) 박지현, “무인항공기에 대한 법적 쟁점 연구”, 『홍익법학』, 제16권 제2호, 법학연구소, 2015, pp. 99-101.

34) Green War: An Assessment of the Environmental Law of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22:1 YALE J. INT'L L. 1, 52 (1997), p. 55.

35)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Nicar. v. U.S.), 1986 I.C.J. 4, 94.

36) Roberts & Guelff, at 5. The concept of reprisals has proven controversial in international law.

이익을 명백히 초과하는 때에는 공격이 금지된다. 즉 합법적인 무기로 합법적인 군사목표물을 공격한다고 하여도, 그로 인해 얻을 이익보다 부수적으로 초래될 민간인 피해가 훨씬 더 크다면, 그러한 공격은 금지된다. 물론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가 전혀 없을 수는 없으나, 지휘관은 군사적 이익과 부수적 피해를 반드시 비교하여야 하는 것이다. 부수적 피해의 위험이 클수록 공격목표의 중요도도 높아야 공격이 정당화될 수 있다.³⁷⁾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드론에 대한 비례성의 원칙의 합치여부에 대한 신중하고 세밀한 검토가 조금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다중적인 정보원의 부족은 정확한 목표물을 식별할 수 있는 드론의 능력을 제한한다. 드론의 카메라가 현저하게 선명한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공중에서 직접 육안으로 표적을 볼 때 보다 드론의 조종자가 정확하게 식별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한 예로, 9.11 테러 공격 직후, 드론 조종사는 아프카니스탄의 동쪽 국경근처에서 백색 옷을 입고 걸어가고 있던 키 큰 남성을 발견하였다. 정보장교는 그 남성을 오사마 빈 라덴이라고 판단하여 드론의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잘못된 판단이 되어 무고한 시민들을 사살하였다. 지상군의 존재 없이, 드론은 불완전한 정보로 작전을 하면서, 결국에는 무고한 시민의 희생을 야기하게 될 지도 모른다.³⁸⁾

CIA의 드론 프로그램에 의한 시민 희생자는 살인자 사살이라는 임무에 한해서만 배타적으로 드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주요한 비판 중 하나가 되고 있다. 2006년부터 파키스탄에서 82회의 드론 공격으로 750에서 1,000명의 사살되었으며, 그 중 250-300명의 시민들이 포함되었다. 이 숫자는 사망 군인 3명당 약 1명의 민간인에 해당하는 것이다. 어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격에 따른 부수적인 피해가 그들이 제거하는 것 보다 많은 군인들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즉, 발전된 기술력의 사용은 더 많은 테러리스트를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³⁹⁾

또한, CIA의 파키스탄- 전쟁지역이라고 인식되지 않고 있는-에서의 드론 작전

37) 이영진, 전제논문(주3), p. 17.

38) 이영진, 전제논문(주3), p. 17.

39) Anne C. Cunningham, *Drones, Surveillance, and Targeted Killings*, Greenhaven Publishing, (2017), p. 39.

이 국제법에 합치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는 무장된 드론을 배치하기 전에, 드론이 중거리 핵무기 조약이나 기타 국제조약에 완전히 합치한다고 간주하였다. 그러나 사살된 목표물이 국제법에 부합함을 보증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많은 법률가들은 드론에 의한 공격은 국외에서 테러로 의심되는 시민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⁴⁰⁾ P.W.Singer는 많은 인터뷰에서 국제법의 어떠한 참조점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또한 그는 만약 잘못이 있을 때 지휘계통상 처벌을 받아야만 할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누구도 해답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콜럼비아 대학교의 Matthew Waxman 교수는 국제법상 전쟁법의 비례성 원칙-군사적 목적 달성과 시민 희생에 대한 형평성의 균형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원칙-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⁴¹⁾ 최근 유엔 인권사찰관은 미국이 드론을 사용함에 있어서 국제법을 위반하는 무작위적인 사살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한다고 언급하였다. 드론을 이용한 작전이 무고한 시민의 희생을 계속해서 야기한다면, 그것이 국제법에 합치하는지 더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차별의 원칙에 대한 인식의 보편화는 더욱 정밀한 타격을 가능케 하는 기술의 발전과 일치한다. 정밀 유도 무기가 장착된 드론 등의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은 국가들로 하여금 표적을 더욱 정밀하게 식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산업지역 혹은 도시 전체를 폭파함으로써 민간인 피해가 불가피하게 되었던 경우들을 방지하게 되었다.⁴²⁾ 이러한 배경을 놓고 보면, 정밀 유도무기가 장착된 드론은 만병통치약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드론은 군사적으로 유용할 뿐더러 동시에 표면적으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국가들이 국제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법과 전술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었다. David Mets가 주장했듯이 군은 부수적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그에 대한 처벌을 국제비난과 피해국

40) Ibid, p. 40

41) Ibid, p. 41.

42) John Kaag, Sarah Kreps, Drone Warfare (War and Conflict in the Modern World), Polity Press(2014), p. 80.

의 분노라는 형태로 받는다. 이 주장에 따르면 첨단 군사기술은 군사와 민간인 표적을 식별함에 있어서는 유용하다. 드론에 탑재되는 “smart bomb”이라는 무기들의 이름조차 이 무기가 군사적 효용성과 국제규범 준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여준다. 미 공군 **Buster Glosson** 중장이 언급했듯이 핵심은 얼마나 많은 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성과를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⁴³⁾

미국이 자국의, 특히 미국 드론 폭격의 대부분을 명령한 오바마 정권의, 드론 폭격이 국제법을 준수한다고 강력히 변호하는 점 역시 국가의 무력사용 적법여부의 중요성이 얼마나 보편화되었는지 보여준다. 당시 법무부 법률고문 **Koh**는 2010년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에서 행한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의 견해와 본인의 경험에 따르면 무인비행체를 이용한 살상작전 등을 포함한 미측의 표적처리는 전쟁법을 포함한 모든 준거법을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이 연설은 미정부가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혹은 최소한 준수하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압박이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측의 드론 정책은 국제사회의 주시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유엔이 발간한 드론 보고서는 미국이 남아시아의 테러리스트를 표적처리함에 있어서 국제법의 한계를 넘었다고 밝혔다.

UN’s Special Rapporteur on Extrajudicial, Summary or Arbitrary Executions인 **Philip Alston**은 이 보고서의 결론에서 누가, 어떤 상황에 표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계가 허물어지고 더욱 확대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⁴⁴⁾ 또한, 마하바라타(B.C.200 - A.D.200)⁴⁵⁾에서도 초과과적인 무기의 사용은 금지된다고 알려지고 있다. 전쟁은 통상적인 무기 사용에 제한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사 **Arjunar**가 전 생명체를 몰살시키는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2013년 미 공군의 전 조종사이자 드론부대 지휘관이었던 마르타 맥셀리는 2013년 4월 23일 상원 벌률소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목표물에 대

43) Ibid, p. 81.

44) Ibid, p. 82.

45) 인도 고대의 산스크리트 대서사시. '바라타족(族)의 전쟁을 읊은 대사시(大史詩)'란 뜻으로 오랜 세월을 걸쳐 구전(口傳)되어 오는 사이에 정리·수정·증보를 거쳐 4세기경에 지금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네이버 지식백과] 마하바라타 (세계문학사 작은사전, 2002. 4. 1., 가람기획)

한 공격을 실행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현명한 전략이다. 드론 플랫폼은 종종 작전의 정확도를 최대한 높이고 지속적인 정보수집과 대응 그리고 지휘관과 정보,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내는 데 가장 좋은 선택지를 제공한다. 또한 드론은 미국 시민의 희생 위험 없이 시민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투자한다는 이점을 제공한다. 부가적으로 드론 조종자는 임무수행 간 수많은 여타 요소들을 취급해야 하는 전투조종사 보다 덜 실수를 하면서 안전한 장소에서 임무를 수행한다. 무력충돌법은 전시 무기선정과 사용금지 무기를 다루고 있다. 특히 무차별적인 무기 사용은 본질적으로 금지된다. 이 같은 관습법은 국제적, 비국제적 분쟁 모두에게 적용된다. 무기가 무차별적이거나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하는 무기는 금지된다는 것이 국제관습법에서 유래한다.

무력사용과 관련하여 1977년의 추가의정서 제36조에서 신무기, 전투수단, 전쟁방법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국제법에서는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 시키거나 무차별적인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추가의정서 제51조 4항에서 무차별적인 공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특별한 군사적 목표물을 직접적 대상으로 하지 않는 공격행위, 군사적 목표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없는 공격행위는 제한된다. 군사적 목표물과 시민을 구별하기 어려운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하마스나 헤즈볼라가 수년간 이스라엘에 대해 발사한 로켓은 본질적으로 무차별적인 무기이다. 또한, 폭탄 투하 지점 내 모든 생명체를 살상할 집속탄과 핵무기와 같이 부가적으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과도한 부상을 초래할 무기는 금지된다. 한편, 미국은 *jus in bello* 원칙에 의거하여 드론의 군사적 사용을 옹호한다.

차별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은 공정한 전쟁의 전통에 기반한다. 19세기를 시작으로 국가들은 공정한 전쟁에 관한 관념, 조약, 의정서 등을 성문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성문화는 현대에 와서 비전투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제인도법을 탄생시켰다. 국제인도법은 전쟁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사악한 자들을 상대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 한다. 국제인도법은 국제인도적 염려와 국가의 군사적 필요성의 균형을 맞추고자 한다. 특히 국제인도법은 국가들로 하여금 민간인과 전투원을 구별하고, 민간인에게 가는 부수적 피해가 군사적 이득에 비례할

것을 요구한다.

비례성의 원칙은 차별의 원칙과 깊은 관련이 있다. 비례성의 원칙을 충족하려면 얻고자 하는 군사적 이득이 예상되는 민간인 및 물자 피해를 초과해야만 한다. 정책 및 법률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드론 폭격이 비례성의 원칙을 충족하는가에 대해 논의해왔다. 불행히도 이들은 본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종류의 공격이거나 본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자들에 의해 감행된 공격을 “불균형”한 공격이라고 판단했다.

이보다는 작전 수행 전 민간인 피해 예측과 실제 피해를 비교하는 것이 더욱 정확할 것이다. 이 수치는 차이가 매우 큰데 New America Foundation에 의하면 17%인 반면 Bureau of Investigative Journalism에 따르면 23.85%였다. UMASS Drone프로젝트는 심지어 3.86%라는 통계를 내었다. 이 데이터는 드론 폭격이 군사표적을 민간인보다 3배에서 19배 더 많이 살상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드론 폭격이 비례성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다거나 비도덕적, 불법적이라는 주장은 틀렸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다른 자료들은 미정부에 호의적이지 않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드론의 정밀 타격으로 인해 대략 14명의 테러리스트 리더들이 살상되었으나, 파키스탄 측의 자료에 따르면 그로 인해 700명의 민간인도 살상되었다. 이 수치에 따르면 리더 1명당 50명의 민간인이 살상된 것이고, 2%의 적중률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기준을 사용하더라도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민간인 피해를 군사적 이익과 비교하는 것은, 후자를 얼마나 광범위하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갈리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마지막으로 부수적 피해의 정의에 대한 모호성의 문제가 있다. 현대 군사 매뉴얼은 부수적 피해의 두 가지 정의를 사용한다. 첫 번째 정의는 부수적 피해를 의도하지 않은 피해 및 인명피해로 정의한다. 이 정의를 놓고 보자면 드론의 정밀성이 부수적 피해를 줄인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정의는 부수적 피해를 당시 정황상 적법한 군사 표적이 되지 않았을 목표물을 상대로 의도하지 않거나 부수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드론이 부수적 피해를 줄인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드론은 당시 정황상 특정 목표물이 “적법한 군사표적”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 두 번째 정의가 보

여주듯이 인간 판단의 정밀성과 기술의 정밀성을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⁴⁶⁾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국제법상 드론은 공개적으로 금지된 무기도 아니며 본질적으로 무차별적인 무기도 아니다. 일반적으로 헬파이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드론은 어떠한 국제법이나 협약에서도 금지되지 않는다. 드론은 첨단기술적 특성과 확장된 감시정찰 능력 그리고 정밀유도 헬파이어 미사일과 결합될 때 차별적인 무기 체계이다. 수 시간 동안 표적을 추적하고 발사 전까지 정확한 표적조준과 시민들의 희생과 피해를 최소화할 의도로 공격시간,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짐으로써 시민들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군사용 드론은 쉽게 실질적인 군사목표물을 식별하고 가능한 한 군사적 목표물에 제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드론은 추가의정서 51 조 4항의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지금까지 드론의 국제적 법적쟁점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법상에서의 드론 사용을 차별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초점을 두고 분석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협력과 평화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갈등과 반목으로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첨단 무기체계가 발전하고 있으며, 민간인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전쟁 지도부 또는 핵심적인 인물을 제거하여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정찰, 목표물 탐지, 타격 및 핵심인물 제거를 위해 드론이 이용되고 있다.

특히, 무인항공기는 조종사나 아군의 인명 피해 없이 적군을 제압하거나 타격할 수 있는 유용한 무기이며, 경제적인 무기라고 알려지고 있다. 최근에는 아프카니스탄이나 파키스탄 지역에서 은거하고 있는 테러 지도자나 핵심인물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로서 잘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무고한 시민이나 비

46) Ibid, p. 96.

전투요원들이 희생되거나 사살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드론의 운용이 국제법 또는 전쟁법에 합치하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가 도입하거나 운용할 무기의 하나로서 드론 사용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문명국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군용 드론은 기존의 인적손실 위험을 피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중국, 이스라엘을 비롯한 선진국 군대들은 이미 수십년전부터 군용드론을 개발, 운영해오고 있다. 미국은 세계 분쟁지역에서 군용 드론을 활용하고 있으며, 테러와의 전쟁에서도 드론을 활용하여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드론 산업을 주도하면서 군용드론 개발과 운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미래 로봇전, 첨단전, 네트워크전 양상에 걸맞게 감시정찰 임무와 더불어 기만작전, 기상임무 나아가 공격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가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 물론 현재에는 무인항공기가 유인항공기의 보조적 수단, 전술적 임무에 치중하고 있지만 기술발전과 더불어 무인항공기의 임무가 더욱 확대되면서 전략적 수준까지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가까운 미래에 한반도 주변국가들과 하늘에서 조우할 가능성도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 즉,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에 중국이나 일본의 유인 및 무인항공기가 진입하였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제기되게 될 것이다. 특히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북한은 비대칭적인 전력의 하나로 드론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탑재한 드론 도발 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도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도 육군에서 제대별로 드론 전력을 운용하고 있으며, 공군에서는 중고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글로벌호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도 우리의 드론 전력은 전술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최근 한반도에서는 남북한 교류협력과 평화정착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나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 및 안보위협은 상존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주변에서 ‘더딤밤’

과 같은 물질을 무인항공기에 탑재하여 별때처럼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무인항공기는 적들이 전통적인 재래식 무기의 비대칭적인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활용할 수도 있는 유용한 수단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 주변의 비대칭적인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술적, 전략적 차원의 신속, 정확한 정보 획득과 타격을 가능케 할 수 있도록 군사용 드론의 운영능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김성배·김성진, “주요국 군사용 무인항공기 동향 및 시사점,” 『주간국방논단』, 1501호 (14-6), 2014.
- 김형구·남구현, “현대전 양상변화에 따른 공중작전의 국제법적 동향과 과제 : 하버드 매뉴얼의 분석 및 평가를 중심으로,” 『공군법률논집』
- 박지현, “무인항공기에 대한 법적 쟁점 연구,” 『홍익법학』, 제16권 제2호, 법학연구소, 2015.
- 방사청, 『미래 전쟁의 주역 무인항공기』, 2008.
- 신홍균, “우주공간에서의 무기배치와 사용의 법적 지위,”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2권 제2호, 한국우주정책·법학회, 2017.
- 이영진, “무인항공기의 발전과 국제법적 쟁점,”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6권 제2호, 한국우주정책·법학회, 2011.
- 임덕규, 『전쟁과 국제법-정당한 전쟁론을 중심으로-』, 법문사, 1985.
- 임예준, “인공지능 시대의 전쟁자동화와 인권에 관한 소고 : 국제법상 자율살상무기의 규제를 중심으로,” 『고려법학』, 제92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 정영진, “우주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 우주법의 점진적인 발전을 중심으로,”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0권 제1호, 한국 우주정책·법학회, 2015.

[국외문헌]

- Adam Roberts & Richard Guelff, Introduction to DOCUMENTS ON THE LAWS OF WAR, 1, 14(Adam Roberts & Richard Guelff, eds., 1989)
- Andrew Callam, Drone Wars: Armed Unmanned Aerial Vehicles, Volume XVIII, No. 3: Winter 2010(The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 Anne C. Cunningham, Drones, Surveillance, and Targeted Killings, Greenhaven Publishing, (2017)
- Blom, John David, *Unmanned Aerial Systems: A Historical Perspective*, Occasional Paper 37 (Combat Studies Institute Pr. U.S. Army Combined Arms Center, 2010), p. 45.
- Brannen, Samuel J. “Sustaining the US Lead in Unmanned Systems”

- Burrus M. Carnahan, Unnecessary Suffering, The Red Cross and Tactical Laser Weapons 18 LOY. L.A. INTL & COMP.L.J. 705, 714 (1996); Declaration Renouncing the Use, in Time of War, of Explosive Projectiles Under 400 Grams Weight, Dec. 11, 1868, (1907 Supplement) 1 AM. J. INT'L L. 95.; Concerning Expanding Bullets, July 29, 1899, (1907 supp.) 1 AM. J. INT'L L. 155. ;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Conventional Weapons] on Non-Detectable Fragments (Protocol I), Apr. 10, 1981, 1342 U.N.T.S. 7 ; n172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Conventional Weapons] on Blinding Laser Weapons (Protocol IV), Oct. 13, 1995, 35 I.L.M. 1218 (1996)
- CRS, *Unmanned Aircraft Systems(UAS): Manufacturing Trends*.
- DoD, USI Roadmap, 2013~2038., Headquarters U.S. Air Force, *U.S. Air Force, U.S. Air Force, RPA Vector: Vision and Enabling Concepts 2013~2038.*
- Forecast International, "Forecast International Expects UAV Market to Rise Strongly through the Next Decade; Unmanned Land & Sea-Based Systems' Values also Growing,"(Forecast International, 15 April, 2014)
- FREDERIC DE MULINEN, HANDBOOK ON THE LAW OF WAR FOR ARMED FORCES, (Int'l Committee of the Red Cross 1987)
- Graham Warwick and Larry Dickerson, "Cooling Down? Export and civil unmanned aircraft demand will grow, but mainstay military markets may slow,"*Aviation Week & Space Technology*, December 31, 2012, 84.,*Unmanned Aircraft Systems(UAS): Manufacturing Trends*, CRS, 2013
- Green War: An Assessment of the Environmental Law of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22:1 YALE J. INT'L L. 1, 52 (1997)
- JACOB WARE, "TERRORIST GROUP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KILLER DRONES", september 24, 2019.
- Jeremy Rabkin and John Yoo, STRIKING POWER, New York, 2017,
- John Kaag, Sarah Kreps, Drone Warfare (War and Conflict in the Modern World), Polity Press(2014)
- Kerstin Fisk, Jennifer M. Ramos, Preventive Force: Drones, Targeted Killing, and the Transformation of Contemporary Warfare Paperback, NYU Press(July 5, 2016)
- LESLIE C. GREEN, THE CONTEMPORARY LAW OF ARMED CONFLICT 101 (1993).

Professor Green, quoting from a treatise dating to 1802, states that "it is only with the writers of the nineteenth century that either a clear definition or the rights of soldiers or the first usage of the term 'combatants' is found."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Nicar. v. U.S.), 1986 I.C.J. 4, 94.

MNS : Mission Need Statement, Unmanned Aircraft Systems, The Global Perspective 2007/2008, The International UVS Community, 2007

Pearson, Lee, "Developing the Flying Bomb", U.S. Navy

<http://www.history.navy.mil/download/ww1-10.pdf>

Roberts & Guelff, at 5. The concept of reprisals has proven controversial in international law

SIPRI(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Law of War and Doubious Weapons, (Stockholm: Almqvist & Wiksell International, 1976)

Teal Group, "Teal Group Predicts Worldwide UAV Market Will Total \$91 Billion in Its 2014 UAV Market Profile and Forecast"

U.S. Air Force, *U.S. Air Force, RPA Vector: Vision and Enabling Concepts 2013 ~2038*, (Headquarters U.S. Air Force, 2014)

Vivek Sehrawat, "Legal Status of Drones Under LOAC and International Law", Penn State Journal of Law & International Affairs Volume 5, Issue 1 War in the 21st Century and Collected Works, April 2017

초 록

오늘날 국제사회는 협력과 평화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갈등과 반목으로 끊임없이 전쟁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첨단 무기체계가 발전하고 있으며, 민간인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전쟁 지도부 또는 핵심적인 인물을 제거하여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정찰, 목표물 탐지, 타격 및 핵심인물 제거를 위해 드론이 이용되고 있다. 드론은 조종사나 아군의 인명 피해 없이 적군을 제압하거나 타격할 수 있는 유용한 무기이며, 경제적인 무기라고 알려지고 있다. 최근에는 아프카니스탄이나 파키스탄 지역에서 은거하고 있는 테러 지도자나 핵심인물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로서 잘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무고한 시민이나 비전투요원들이 희생되거나 사살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드론 작전 시 전투원과 비전투요원에 대한 차별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드론은 첨단 기술력으로 인해 전투원과 비전투요원을 더욱 잘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드론 작전 시 교전 당사국은 시민과 전사 그리고 민간 목표물과 군사적 목표물을 항상 구별하고 단지 군사적 목표물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작전을 수행해야만 한다.

또한 드론을 활용하는 군사작전 시 기대되는 군사적 이점과 야기될 손해간의 균형을 요구하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이는 근본적으로 재산이나 시민에게 부가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군사력 사용을 금지한다. 드론은 수 시간 동안 표적을 추적하고 발사 전까지 정확한 표적조준과 시민들의 희생과 피해를 최소화할 의도로 공격시간,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짐으로써 시민들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군사용 드론은 쉽게 실질적인 군사목표를 식별하고 가능한 한 군사적 목표물에 제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드론은 추가의정서 51조 4항의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드론, 전쟁법, 비례의 원칙, 차별의 원칙, 전투원과 비전투원, 정의전쟁

Abstract

International Law on Drone's Military use - Focus on Proportionality and Discrimination Principles -

Hong-Je Cho* · Ho-Jeung Kang**

Despite grow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wars continue to occur due to conflicted state interests. Continuing conflicts has advanced development of various weapon systems such as global integrated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However, with a big increase in the number of civilian casualties caused by the weapon systems developmen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lso advanced diplomatic efforts to minimize deaths of civilian and military personnel.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observe the principle of discrimination between combatants and non-combatants when operating unmanned aerial vehicles (UAVs), better known as drones. Drones have become more capable of distinguishing combatants from non-combatants due to its high-tech prowess. In the operation of drones, any parties involved in combat or the war are responsible for mounting civilian casualties. In addition, it should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at calls for a balance between results of such action and expected military advantage anticipated from the attack. The rule of proportionality prohibits use of military force which may be expected to cause excessive civilian harm. Drones have been able to track and monitor targets for hours and select the accurate locations of the targets. The aim is to reduce civilian losses and damage to a minimum. Drones meet the standards of Article 51.4 of the Additional Protocol.

Key Words : Drone, LOAC, Proportionality, The Principle of Discrimination, Combatants and Noncombatants, *Jus ad bellum*

* Ph.D., Senior Research Fellow, Research Institute on National Security Affairs, National Defense University.

** Ph.D., Associate Professor, Dept. of Military Science, Kyungnam University.